



원본: **영어**

번호: ICC-02/05-01/07  
날짜: 2007 년 4 월 27 일

**제 I 예심원**

담당: 판사 아쿠아 쿨니히아, 부장판사  
판사 끌로드 요르다  
판사 실비아 스타이너

사무총장: 브루노 카탈라

**수단 다르푸르 사태**

아흐마드 무하메드 하룬 (“아흐마드 하룬”) 및 알리 무하메드 알리 압달라만 (“알리  
쿠샤입” 기소에 관한 건

**공개문건**

**알리 쿠샤입에 대한 체포영장**

**검사실**

루이스 모레노 오캄포, 검찰총장  
파투 벤수다, 부장검사  
앤드류 케일리, 수석검사  
아데 오모파데, 검사

국제형사재판소 (“재판소”) 제 I 예심원 (“예심원”) 은;

2007 년 2 월 27 일자, 로마법전 58 조 7 항에 근거한 검찰측의 아흐마드 하룬과 알리 쿠샤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(“검찰측 신청”) 및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밖의 정보들을 검토하였으며;<sup>1</sup>

예심원은 로마법전 제 58 조 7 항<sup>2</sup>에 근거한 결정에서, 알리 쿠샤입의 출두에 대한 소환장이 그의 법정출두를 보장하는데에 충분치 않으며, 로마법전 (“법전”) 제 58 조 1 항(b)에 의거 그의 체포가 필요함을 고려하였다;

이에 법전 제 19 조와 58 조를 참조하여;

검찰측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보에 근거, 법전 제 19 조 2 항(a)와 (b)에 따른 재판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따른 판단과는 하등의 관련없이, 아흐마드 하룬과 알리 쿠샤입에 대한 기소는 재판소의 사법관할권에 해당이 됨을 고려하고;

2002 년 8 월부터 적어도 검찰측 체포영장신청에 관련된때까지, 수단 육군, Popular Defence Force (“PDF”), 잔자위드 민병대쪽과 수단해방군 및 정의와 평등전선 (戰線)쪽의 사이에서, 법전 제 8 조 2 항(f)에 해당되는 지속적 무장분쟁이 발생했으며;

수단 육군과 잔자위드 민병대가 반군진압 작업의 일환으로 코둑, 빈디시, 무크자르, 아라왈라와 그 주변 지역을 2003 년과 2004 년에 이르는 장기간동안 다수의 공격을 가했으나, 이 마을들은 반군활동이 전혀 없었고, 민간인들은 반군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고 볼 정당한 근거들이 발견되었고;

<sup>1</sup> ICC-02/05-62-US-Exp; ICC-02/05-64-US-Exp; ICC-02/05-69-US-Exp; and ICC-02/05-72-US-Exp.

<sup>2</sup> ICC-02/05-01/07-1.

수단 육군과 잔자위드 민병대가 이 공격들을 가하는 과정인 2003 년 8 월에서 2004 년 3 월 사이에, 특히 퍼, 자가와, 마살리트 지역에서 민간인 살해, 강간,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유린, 민간인들에 대한 의도적 공격 및 위 지역민 소유의 재산에 대한 파괴등의 범죄행위들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;

위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, 법전 제 8 조 (2)항(c)(i), 제 8 조 (2)항(c)(ii), 제 8 조 (2)항(e)(i), 제 8 조 (2)항 (e)(v), 제 8 조 (2)항(e)(vi), 및 제 8 조 (2)항(e)(xii)에 해당되는,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들이, 검찰측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있듯이, 일어났다고 볼 정당한 근거들이 있고;

수단육군과 잔자위드 민병대에 의한 공격들은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으며, 주로 퍼, 자가와, 마살리트 지역의 민간인들에게,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구성하는 국가적 혹은 조직적 정책의 추진에 따라 행해져왔다고 볼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;

이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로 퍼, 자가와, 마살리트 지역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처형, 살인, 강제이주, 감금 및 강제 구금, 고문, 강간과 기타 다른 비인간적 행동들을 수단 육군 및 잔자위드 민병대가 저질렀다는 정당한 근거가 있고;

위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, 법전 제 7 조 (1)항(a), 제 7 조 (1)항(d), 제 7 조 (1)항(e), 제 7 조 (1)항(f), 제 7 조 (1)항(g), 제 7 조 (1)항(h) 및 제 7 조 (1)항(k)에 해당되는,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해당되는 반인륜범죄들이, 검찰측의 체포영장신청서에 있듯이, 일어났다고 볼 정당한 근거들이 있고;

알리 쿠샤입은 2003 년 8 월 무렵부터 2004 년 3 월경까지 와디 살리 지역의 최고 지도자들 중의 하나이자 PDF 의 일원으로 수천의 잔자위드 민병대를 거느렸음을 보이는 정당한 근거들이 있으며;

알리 쿠샤입은 PDF 의 일원이자 잔자위드 민병대의 최고 지도자로서, 위에 언급된 수단 다르푸르에서의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범죄로 귀결된 수단정부의 반정부군 전략을 이행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들이 있고;

또한 와디살리 지역의 잔자위드 민병대와 수단정부간의 “중개자”로 여겨지는 알리 쿠샤입은, 자기 휘하의 잔자위드 민병대 병력에 대한 동원, 무장, 군비지원, 보급 및 여타 다른 지원들로 말미암아 수단 육군과 잔자위드 민병대가 다르푸르의 민간인들을 공격함으로써 위에 언급된 범죄들을 저지르는데 의도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정당한 근거들이 있으며;

알리 쿠샤입은 수단 육군과 협조하는 잔자위드 민병대의 지도자로서, 2003 년 8 월부터 2004 년 3 월 사이의 기간동안, 코둠, 빈디시, 무크자르 및 아라왈라지역의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, 강간, 고문 및 기타 잔인한 취급, 마을의 약탈, 민간재산의 파괴등의 행태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여 다른이들과 동시에 위에 언급된 범죄들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;

위의 이유들에 근거, 알리 쿠샤입은 법전 제 25 조 (3)항(b) 및 제 25 조 (3)항(d)에 명시된 반인륜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하여, 검찰측 체포영장신청에 특히 나타난대로 다음의 공소사실(公訴事實)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볼 정당한 근거가 있다:

### 공소사실 1

(코둠부락 및 주변지역에서의 처형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2003 년 8 월 31 일경까지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주민들에 대한 살인과 민간인 공격, 재산파괴 및 강제이주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h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2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3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4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31 일 무렵부터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5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31 일 무렵부터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6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2003 년 8 월 31 일경까지,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7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2003 년 8 월 31 일경까지,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8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재산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2003 년 8 월 31 일경까지,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게 속한 재산의 파괴 및 그 주거지의 방화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x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9

(코둠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제이주는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2003 년 8 월 31 일경까지, 코둠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약 20,000 명에 달하는 퍼계(係) 민간인들의 강제이주 및 그로인한 마을의 황폐화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d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10

(빈디시부락 및 주변지역에서의 처형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주민들에 대한 처형에 기여함에 있어서 살인, 강간, 민간인공격, 비인간적 행동, 약탈, 재산파괴 및 강제이주를 자행함 (법전 제 7 조(1)항(h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11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100 여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12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100 여명 이상의 퍼게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13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간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게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에 협조함 (법전 제 7 조(1)항(g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14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간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게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에 협조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15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게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16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게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17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비인간적 활동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끔찍한 고문 및 비인간적 활동들로 인한 육체적, 정신적 중(重)상해, 비인간적 충격으로 발생한 증상들을 초래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k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18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약탈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 소유의 가재(家財)를 포함한 재산을 약탈함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19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재산의 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인구들 소유의 음식창고, 사원과 거주지들에 대한 방화를 포함한 재산의 파괴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x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20

(빈디시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제이주는 반인륜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 15 일 무렵부터, 빈디시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약 34,000 명에 달하는 퍼계(係) 민간인들의 강제이주 및 그로인한 마을의 황폐화에 기여함(법전 제 7 조(1)항(d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21

(무크자르 부락 및 주변지역에서의 처형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부터 2004 년 3 월 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주민들에 대한 처형에 기여함에 있어서 살인, 민간인공격, 감금 및 자유권의 심각한 박탈, 고문, 약탈, 및 재산파괴 를 자행함 (법전 제 7 조(1)항(h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 공소사실 22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9 월부터 2003 년 10 월 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20 명 이상의 피해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 공소사실 23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9 월부터 2003 년 10 월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20 명 이상의 피해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 공소사실 24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21 명 이상의 피해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 공소사실 25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3 년 12 월 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21 명 이상의 피해(係) 민간인들을 처형지로 무장 호송함으로써 그들을 대한 살인을 자행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a));

## 공소사실 26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20 명 이상의

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27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3 년 12 월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반군 활동에 참여치 않은 적어도 21 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을 처형지로 무장 호송함으로써 그들의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a));

### 공소사실 28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4 년 3 월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32 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29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4 년 3 월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32 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을 처형지로 무장 호송함으로써 살인을 자행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a));

### 공소사실 30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4 년 3 월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반군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32 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31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4 년 3 월무렵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반군 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32 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을 처형지로 무장 호송함으로써 살인을 자행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a));

### 공소사실 32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부터 2004 년 3 월사이에,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33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3 년 8 월부터 2004 년 3 월사이에,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퍼계(係) 민간인들을 공격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a));

### 공소사실 34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감금 및 자유권의 심각한 박탈은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경부터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최소한 400 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의 감금 및 신체자유권의 심각한 박탈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e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35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고문은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경부터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, 특히 최소 60 명 이상의 퍼계(係) 민간인들의 고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f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36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약탈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부터 2004 년 3 월사이에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게(係) 민간인들 소유의 상점, 주거지 및 가축등을 포함한 재산을 약탈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38

(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재산의 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8 월부터 2004 년 3 월사이에, 무크자르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게(係) 인구들 소유의 거주지에 대한 방화 및 곡식과 농장등의 재산 파괴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x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39

(아라왈라 부락 및 주변지역에서의 처형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무렵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게(係) 주민들에 대한 처형에 기여함에 있어서 살인, 강간, 민간인공격, 존엄권에 대한 유린, 비인간적 활동, 약탈, 재산파괴 및 강제이주를 자행함 (법전 제 7 조(1)항(h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40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반인륜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, 적어도 26 명 이상의 퍼게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a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41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의 반군활동과 무관한 적어도 26 명 이상의, 특히

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42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간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 특히 적어도 10 명 이상의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g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43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간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 특히 적어도 10 명 이상의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에 협조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44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# 공소사실 45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과 반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공격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i) 및 제 25 조(3)항(a));

**공소사실 46**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존엄권에 대한 유린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의 적어도 10 명 이상의, 특히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의 존엄권을 유린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**공소사실 47**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존엄권에 대한 유린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다른 자들과 공모하여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의 적어도 10 명 이상의, 특히 퍼계(係) 부녀자들과 소녀들의 존엄권을 유린함 (법전 제 8 조(2)항(c)(ii) 및 제 25 조(3)항(a));

**공소사실 48**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비인간적 활동은 반인륜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에 대한 끔찍한 고문 및 비인간적 활동들로 인한 육체적, 정신적 중(重)상해들을 초래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k) 및 제 25 조(3)항(d));

**공소사실 49**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약탈은 전쟁범죄에 해당)

**알리 쿠샤입**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민간인들 소유의 상점, 가옥 및 가축을 포함한 재산을 약탈함에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v) 및 제 25 조(3)항(d));

**공소사실 50**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재산의 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퍼계(係) 인구들 소유의 재산을 포함한 아라왈라 부락을 대부분 파괴하는데 기여함 (법전 제 8 조(2)항(e)(xii) 및 제 25 조(3)항(d));

### 공소사실 51

(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에서의 강제이주는 반인륜범죄에 해당)

알리 쿠샤입은 동일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내의 일원으로서, 2003 년 12 월 무렵부터, 아라왈라 부락과 그 주변, 특히 약 7,000 명에 달하는 퍼계(係) 민간인들의 텔레이그, 가르실라 및 그외의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및 그로 인한 마을의 황폐화에 기여함 (법전 제 7 조(1)항(d) 및 제 25 조(3)항(d));

법전 제 58 조 (1)항 (b)(i) 및 (ii)에 비추어볼 때, 이시점에서 알리 쿠샤입의 체포는 그의 법정출두 및 수사방해를 막기위해 필요한것으로 여겨지므로;

이상의 이유들에 근거하여,

다음과 같이 발부한다:

**알리 쿠샤입** (알리 무하메드 알리 압달라만)에 대한 **체포영장**; 50 세로 추정됨; 수단 국적; 아버지는 타이샤 (타이차) 부족, 어머니는 남부 수단 단가위 부족 출신임; 부족장이며 PDF 의 일원; 다르푸르의 와디 살리지역 전체의 “아키드 알 오가다” (일종의 총사령관) 역임; 잔자위드 민병대의 최고 지도자중 한명으로 사료됨; 현재 2005 년 4 월 수단 기관에서 발급되어 2006 년 11 월 28 일에 집행된 체포영장에 의거하여, 수단경찰에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보임; 이름은 알리 코셰입, 알리 코우침, 알리 무하메드, 알리 코셉, 코셉 및 알리 코쉴등으로 표기되기도 함.<sup>3</sup>

영문 및 불문으로 작성되었으며, 영문판에 권위가 있음.

---

<sup>3</sup> 영문표기 원본 참조.

---

판사 아쿠아 쿨니히아  
부장판사

---

판사 골로드 요르다

---

판사 실비아 스타이너

2007 년 4 월 27 일 금요일  
네덜란드 헤이그